

##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토론자 채정화(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기술의 발전은 SNS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기회와 활동에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의 일면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등의 부작용도 상존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여성혐오’에서 비롯한 범죄 및 여성 혐오 콘텐츠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규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NS 상에서의 ‘여성 혐오적 표현’으로 사회적 타살을 야기하거나 선동적 수준의 혐오 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야기 등에 대한 우려가 큼니다. 이에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연구는 규제 수단 마련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혐오표현에 헌법적 고찰 연구는 있지만 여성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차원에서의 해석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시도의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에게 몇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내 혐오표현과 관련한 규율에서 국내 현황 파악은 가능하지만 시사점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상황과 다를 수 있지만 벨기에의 경우는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 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취지는 가해자 처벌의 목적보다는 여성 혐오표현이 잘못되었다는 도덕적 기준을 명시화한 것으로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국내법의 경우 현행법 및 제출된 법안의 한계, 해외 사례에 대한 함의를 다루게 되면 좀 더 논의가 풍부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과 명확성 원칙과 관련하여 여성 혐오표현이 헌법적 차원에서 제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성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연구자는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의 주체 및 대상이 명확해야 하고, 여성혐오표현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은 자의적 해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규율 대상자에게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법집행자”에게는 객관적 판단지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요구됩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의 주체 및 대상, 사회적 공감대에 대한 내용에서 명확성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법적 판단 기준 및 규제 마련을 위한 가이드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지 못해 여전히 규제 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본 연구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규율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다루고 있는데, 여성혐오표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여성 혐오표현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여성 혐오표현과 관련한 규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조금 앞서서 다뤄지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방송심의 사례, 학생 인권 판례 등에서 혐오 표현과 관련한 규제에서 여성 혐오 표현 규제시 참고해야 할 점으로 혐오표현의 가변성, 여성 혐오표현도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할 때 이러한 기준이 표현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내용이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건이냐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결국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요건으로서의 기준과 명확성 원칙에 부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구분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